

※ 점선 상단은 이미지 전산처리 부분이오니 글씨를 쓰거나 더럽히지 마십시오

일 자 (DATE) :

지 점 명(BRANCH) :

참조번호(REF NO) :

외화송금/지급신청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변경) 신청서)

인감대조	실명확인	담당자	책임자

송 금 인 출 계 좌	송금인출계좌통화: (Currency)	송금인출계좌: (Debit Account)
송 금 방 법 (Send By)	☐ 국외송금(OTT) ☐ 실시간해외송금(OCT) ☐ 원격지수표(ORD) ☐ 국내송금 (☐ OMT ☐ OKT) ☐ 기타()	
송 금 액 (Amount)	(US\$)	통 화 (Currency)
송금취결일(Value Date)	*기업고객중 무통장 고객에게만 적용	구송금번호 *고객님께서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Applicant)	주민/사업자/여권번호	
	한글성명(Korean Name)	
	영문성명(English Name)	
	주소(Address)	(Tel :)
	이메일(e-Mail Address)	@
수 취 인 (Beneficiary)	성 명(Name or co.)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Address)	(Tel :)
	국 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 경우)
수 취 인 거 래 은 행 (Beneficiary Bank)	수취인 계좌번호 (Beneficiary A/C No.)	
	은행명 및 지점명 (Bank Name)	
	은행주소(도시, 국가명) (Bank Address)	
	은행코드 (SWIFT BIC, ABA#, Sort Code etc.)	*씨티은행글로벌계좌이체로 미국/인도 송금시 국가명과 주명(지역명) 필수
국외수수료(Charge)	☐ 신청인 (Applicant) ☐ 수취인 (Beneficiary)	내역 (Payment Details)
자 금 중 개 은 행 (Intermediary Bank)		지급 사유(Payment Reason)
해 외 여 행 경 비 등 의 경 우 기 재	해외여행경비 : 해외 이주비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 귀행을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후 본 서식 상단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할 것)
- 본인은 귀행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급신청 합니다.
- 귀행이 본인의 해외송금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수취은행이 당해 수취은행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송금인명, 고객식별정보(고객 번호 및 주소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수취은행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이 신청서는 외국환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지 정 확 인 번 호	지 정 일 자
	년 월 일	한 국 씨 티 은 행 장 인

지 급 신 고 일 자	신고번호	신고금액
송 금 액 산 식	국외은행수수료	
송 금 수 수 료	전신료	수수료합계
외 화 대 체 액	차 감 원 화 액	

※ 본 신청서는 대외지급수단의 휴대반출에 따른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제공할 금융거래정보 등의 내용 및 범위

- 현금, 예금, 신탁, 유가증권, 투자상품,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본인이 하는 금융거래(외국환 거래 포함)

※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 받을 자 및 목적

1. 거래정보 처리, 가공 및 저장업무 또는 신용장 통지 등 무역관련 업무를 국내 또는 해외로 위탁함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지점, 자회사 및 계열사(이하 “관계 회사”라고 함)에게 제공
2. 귀행의 내부 보고, 감사 및 검사를 위하여 해당 관계회사 및 해외 감독기관에게 제공

3. 본인이 온라인뱅킹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귀행이 본인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제휴를 맺은 자에게 제공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명의인은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이 동의서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당해 금융기관과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행이 본 동의서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 이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한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제공 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본 동의서는 귀행이 본인으로부터 본 동의 및 약사항을 취소하는 서면을 수령할 때까지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 :

(인 또는 서명)

씨티그룹의 “경제제재준수규정” 및 국내의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확인

(주)한국씨티은행은 Citibank N.A.의 자회사로서 씨티그룹의 “경제제재준수규정”(Citigroup's Sanctions Policy) 및 국내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Act On prohibition Against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준수합니다. 요청하신 송금 거래는 “경제제재준수 규정” 및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가능하며,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일 자 (DATE) :
지 점 명(BRANCH) :
참조번호(REF NO) :

외화송금/지급신청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 (변경) 신청서)

인감대조	실명확인	담당자	책임자

송 금 인 출 계 좌	송금인출계좌통화: (Currency)	송금인출계좌: (Debit Account)
송 금 방 법 (Send By)	☐ 국외송금(OTT) ☐ 실시간해외송금(OCT) ☐ 원격지수표(ORD) ☐ 국내송금 (☐ OMT ☐ OKT) ☐ 기타()	
송 금 액 (Amount)	(US\$)	통 화 (Currency)
송금취결일(Value Date)	*기업고객중 무통장 고객에게만 적용	구송금번호 *고객님께서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Applicant)	주민/사업자/여권번호	
	한글성명(Korean Name)	
	영문성명(English Name)	
	주소(Address)	(Tel :)
	이메일(e-Mail Address)	@
수 취 인 (Beneficiary)	성 명(Name or co.)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Address)	(Tel :)
	국 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내국인인경우)
수 취 인 거 래 은 행 (Beneficiary Bank)	수취인 계좌번호 (Beneficiary A/C No.)	
	은행명 및 지점명 (Bank Name)	
	은행주소(도시, 국가명) (Bank Address)	
	은행코드 (SWIFT BIC, ABA#, Sort Code etc.)	
국외수수료(Charge)	☐ 신청인 (Applicant) ☐ 수취인 (Beneficiary)	내역 (Payment Details)
자 금 중 개 은 행 (Intermediary Bank)		지급 사유(Payment Reason)
해 외 여 행 경 비 등 의 경 우 기 재	해외여행경비 : 해외 이주비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 귀행을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연간 미화 10만불 이내 자본거래 신고예외 포함)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후 본 서식 상단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할 것) ■ 본인은 귀행 영업점에 비치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지급신청 합니다. ■ 귀행이 본인의 해외송금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수취은행이 당해 수취은행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송금인명, 고객식별정보(고객 번호 및 주소 등)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수취은행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이 신청서는 외국환통계자료로 활용하며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지 정 확 인 번 호	지 정 일 자
년 월 일 한 국 씨 티 은 행 장 인		

지 급 신 고 일 자	신고번호	신고금액
송 금 액 산 식	국외은행수수료	
송 금 수 수 료	전신료	수수료합계
외 화 대 체 액	차 감 원 화 액	

※ 본 신청서는 대외지급수단의 휴대반출에 따른 근거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외화송금, 원격지수표,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심의필 2108-01-407 (심의일 : 2021년 8월 13일)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1. 외화송금
2. 원격지수표
3. 외국통화 매입
4.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

제 2 조 실명거래

-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릅니다.

제 3 조 외화송금

-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지급은행, 추심은행 등 관련은행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 부호,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신청서 사본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 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⑤ 지급 통화가 수취인 국가의 통화가 아닐 경우, 지급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은행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수취인 국가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원격지수표

- ① 신청인이 외화수표의 발행 및 배송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수표를 원격지수표라 명명합니다.
- ② 원격지수표 발행 신청 시, 은행은 “발행 및 배송 담당 제휴 금융기관”(이하 “제휴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표 발행 신청 및 배송 내용을 전달하여 최종 수취인에게수표가 배송되도록 합니다.
- ③ 신청인은 수표발행 거래를 마친 때 수표 발행신청서 사본 등으로 발행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신청인의 발행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원격지수표의 원본을 반환받거나 제휴 금융기관에 수표지급정지 요청 후, 제휴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제휴 금융기관의 수표지급 정지 수수료 등 발행취소에 소요된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⑤ 원격지수표의 지급자금이 제휴 금융기관에 제공된 경우 은행은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제휴 금융기관에 원격지수표의 액면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 ⑥ 발행 통화가 수취인 국가의 통화가 아닐 경우, 지급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은행의 매입률을 적용하여 수취인 국가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외국통화 매입

- ①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변조 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 시 제출한 “외국환매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외국통화금액과 매입당시의 외화여신 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변조 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추심

- ①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외화수표 등의 기재금액
해당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한 원화금액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징수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3. 기타 부대비용
- ② 은행이 추심대금을 지급한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외화수표 등의 실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의 반환의무는 면제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입(추심)신청 시 제출한 외화수표 등 또는 “외국환매입(추심)신청서”에 근거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며 은행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외화수표 등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 ⑤ 은행이 외화수표 등의 매입 또는 추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부담

- ① 신청인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제1조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권리보전을 위한 법적절차 비용, 기타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부담하며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 하는 바에 따라 곧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우편료, 전신료 등 제반비용의 요율 및 계산방법을 성실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지급거절 등에 따른 법적비용, 대체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안에 따라 금액의 편차가 큰 항목들을 말한다)을 제외하고는 고시토록 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 9조 약관의 변경 사항을 준용합니다.
- ④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은행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 8 조 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외국환거래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9 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지침서식 제3-1호(별지) – 사전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 시 작성]

I. 대금결제방식 및 대응수입예정일

☐ 사전 송금방식 : 국내 통관(물품 인수) 전 수입 대금 지급	☐ 사후 송금방식 : 국내 통관(물품 인수) 후 수입 대금 지급
대금 송금 후 물품(선적서류)수령 예정일	☐ 1년 이내 ☐ 1년 초과 (※한국은행 신고 사항)
▶ 본 서식의 작성 대상이 아님	

사전 송금방식으로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응수입을 이행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 5-9조), 대금 지급 후 1년을 초과하여 수입물품(선적서류)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신고방법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무역거래 형태

☐ 일반 수입 :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하는 경우	
☐ 중계무역 : 수입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 현재 수출계약 체결 ☐ 현재 수출계약 미체결
☐ 외국인수수입 : 수입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인수하려는 경우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무역대금 송금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지침서식 제3-1호(별지) – 사전 송금방식 수입대금 지급 시 작성]

I. 대금결제방식 및 대응수입예정일

☐ 사전 송금방식 : 국내 통관(물품 인수) 전 수입 대금 지급	☐ 사후 송금방식 : 국내 통관(물품 인수) 후 수입 대금 지급
대금 송금 후 물품(선적서류)수령 예정일	☐ 1년 이내 ☐ 1년 초과 (※한국은행 신고 사항)
▶ 본 서식의 작성 대상이 아님	

사전 송금방식으로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응수입을 이행하거나 지급한 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며(외국환거래규정 제 5-9조), 대금 지급 후 1년을 초과하여 수입물품(선적서류)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신고방법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I. 무역거래 형태

☐ 일반 수입 :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하는 경우	
☐ 중계무역 : 수입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 현재 수출계약 체결 ☐ 현재 수출계약 미체결
☐ 외국인수수입 : 수입물품을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인수하려는 경우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무역대금 송금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